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35

발의연월일: 2021. 6. 23.

발 의 자 : 권명호·강기윤·구자근

김도읍 • 송언석 • 엄태영

유상범 • 이만희 • 최춘식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다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부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그러나 인증기관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(안 제10조제6

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)	제10조(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지정
	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「행정
	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
	<u>하여야 한다.</u>
<u>⑥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